

2022 동물등록 **자진신고**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

자진신고 7.1.~8.31.
집중단속 9.1.~9.30.

반려견 등록,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

- 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**의무사항**입니다.
- ❁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,
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.
- ❁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**과태료**가 면제됩니다.



▶ 동물등록 대상

-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- 주택·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
▶ 동물등록 방법

[내장형 방식]

-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
내장칩 시술(주사) 및 등록 신청서 작성·제출

[외장형 방식]

-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, 펫숍 등을 통해
외장형 목걸이를 구입·부착 후 등록 신청서 작성·제출

※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서
확인 가능

▶ 변경신고 대상

10일 이내

-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

30일 이내

-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- 소유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가
변경된 경우
-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
-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
- 외장형 목걸이 분실, 파손으로 인한
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
▶ 변경신고 방법

시·군·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

※ 단,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
반드시 시·군·구청을 방문하여야 함

자세한 문의사항은
지자체 관련 부서 (국번없이)120,
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-0954로 문의주세요.